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934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2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이인영 · 김현정
전현희 · 박해철 · 민병덕
황운하 · 김남근 · 곽상언
이정현 · 이해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,434건,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,771건,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,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·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7항 신설).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또는 위촉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8조(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⑦ (생략)</p> | <p>제18조(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<u>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</u></p> |